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15 - 101

(www.jbe.go.kr)

2015년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http://www.jbe.go.kr/과별홈페이지/ 인성건강과/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북교육 기본방향

■ 교육비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 교육지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주요정책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참된

학력신장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

목 표

-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및 교사(校舍)내 공기질 개선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 보호제도 관리 철저

교사 내 환경 위생관리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유지·관리 강화
- 학교 소음방지 관리

학교 내·외 교육환경관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2015년도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 분	2014년도 주요내용	2015년도 변경내용	비고
	폐기기준	 수질기준 부적합 정수기 폐기기준 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검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 	<변경> 12쪽
1.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대책	저수조 청소주기음용 분기 1회비음용 반기 1회	저수조 청소주기음용 분기 1회비음용 반기 1회(삭제)	<변경> 13쪽
		정수기 특별점검 대상관내 정수기 중 10% 이상(연중 1회 이상)	<변경> 14쪽
	○학교먹는물 관리실적	○ 보고서식 변경	<변경> 44~45쪽
2.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등 교육환경	-	○기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에 대하여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 획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 확인필요	<추가> 24쪽
보호제도 관리철저 보호제도 관리철저	-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서 작성, 제출 및 검토 처리 (서면 제출 병행)	<추가> 26쪽

•••• 목 차 ••••

l		각교 환경위생 관리	1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3
	2.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유지·관리 강화 ·······1	6
	3.	학교 소음방지 관리2	2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 … 2	3
	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3	1
	6.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3	5
	7.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3	8
Ш	. !	<mark>보고 사항</mark> 4	1
	1.	보고 목록 4	3
	2.	보고 서식4	4
] 경	발고 자료 5	9
		정밀검사 46항목 ·······6	
		학교내 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6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6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6	6
	6.	고발요령 및 절차6	7
	7.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6	9

Ⅰ. 학교 환경위생 관리

-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2.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유지·관리 강화
- 3. 학교 소음방지 관리
-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 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6.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7.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기본방침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관련 법령(지침)

- O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 O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
- O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 O 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질검사기관】,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제22조의 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 O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O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O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매뉴얼】

□ 먹는 물의 공급 원칙

- O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5 2항

□ 현 황

- O 2014. 12월 현재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음용하는 학교 32개교(4.1%)
 - '12 : 43 교(5.5%) → '13 : 35 교(4.4%) → '14 : 32 교(4.1%)

< 각급학교 급수시설 현황>

2014.12월 현재

	구 분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16	420	209	132	11	788
급수 시설	상수도 (마을상수도)	16 (100)	402 (95.7)	202 (96.7)	126 (95.5)	10 (90.9)	756 (95.9)
(%)	지하수 (먹는샘물)	0 (0)	18 (4.3)	7 (3.3)	6 (4.5)	1 (9.1)	32 (4.1)

- * 학교수에 분교 포함, 먹는샘물 음용 1교는 지하수 급수시설에 포함
- O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2014년 분기별 1차 측정결과 초과학교)

'14년 1/4분기 12%(4/33교) ➡ 2/4분기 3%(1/33교) ➡ 3/4분기 0% ➡ 4/4분기 0%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수기 또는 냉·온수 기를 설치하여 사용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수기의 관리 및 수질 검사에 따른 문제 상존
- 정수기 사용학교 현황

'11년 677개교 ➡ '12년 697개교 ➡ '13년 718개교 ➡ '14년 736개교

-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검사를 일임하는 사례 및 수질검사 직전 청소 또는 소독 등 문제점 발생
 - * '12년 감사원 주관 학교보건업무 감사 시 일선학교에서의 수질검사 부실관리 등에 대한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
- O「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5에서는 '먹는 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일선학교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가능성 상존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토록 규정(곤란한 경우 제외)하고 있으나, 기존학교 중 많은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수돗물이 저수조 등에서 체류시간이 과다한 경우 잔류염소의 감소로 미생물 오염 가능성 증대
 -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먹는 물은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돗물과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수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아 부실관리에 대한 인지 및 적기 시설개선 곤란

□ 추진방향

O 수돗물 관리대책

가. 수돗물 수질검사

- 1) 관련근거 : 「수도법」제3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2) 저수조 수질검사(수도법 제33조 제2항)
 - 가) 검사대상 :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
 - 나)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 : 연 1회 이상, 6개 항목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 다) 수질검사 유의사항
 - 채수방법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에서 채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 포함)
 - 라)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부적합 판정 시 저수조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재검사 실시
 - 부적합 판정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부적합 판정 시 직결수 연결 방안 마련
- 3) 옥내급수관 일반검사
 - 가) 검사대상(수도법 제33조 제3항)
 - · 건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정체수) 실시
 - 나) 수질검사 유의사항
 - 채수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

- 다) 검사결과 조치사항(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 실시(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 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이면 반드시 갱생하거나 교체)
 -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검사항목 중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급수 관을 갱생(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
 - □ 제척 :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과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
 - □ "갱생 :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
 - ※ 참고사항: 기타 관련 사항은 「수도법」 등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2013.12.09.)

- :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의 경우도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적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u>상기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목적상 사립학교도</u> 동일하게 검사 실시

나. 수돗물 관리사항

- 1)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강구
- 2)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 가) 시설관리개선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최대한 단축

- 나) 운영관리개선
 - · 저수조의 청소주기(분기 1회), 점검주기(월 1회) 준수, 점검일지 작성 · 보관,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 · 시행
 -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대상에서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대상 포함)
- 3)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007 국정감사 지적사항)
- 4) 노후된 급수시설로 인하여 오염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낡은 수도관 및 급수설비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 5)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서 상수도요금 절감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O 지하수 관리대책

가. 지하수 수질검사

- 1) 관련근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표5 라목
- 2) 검사대상 :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분교 포함)
- 3) 수질검사 유의사항
 - 가) 정수시스템시설 설치학교는 지하수(원수)가 아닌 정수 처리된 물을 검사
 - 나)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다) 2개 이상의 지하수를 각각의 저수조(물탱크)를 통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

는 학교는 각각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라) 지하수를 화장실 또는 청소용으로만 사용하는 학교는 반드시 먹을 수 없는 물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부착(생활용수 지하수 3년마다 수질검사 실시)

4)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7. 13	スッ)	수질검사 항목				
구 분	주기	일부 항목(3회/년)-간이검사	전 항목(1회 <i>/</i> 년)-정밀검사			
음용수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량 -6개 항목 (1, 3, 4분기 검사)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46개 항목(2분기 검사) 【참고자료 1】참조			
	검사료	30,200원	267,700원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	칙			

5) 검사결과 조치사항

- 가)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나) 수질검사(1차)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즉시 먹는 물 공급을 중지
 - 부적합 항목에 따라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후 재검사 실시
 -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후 음용수로 사용
- 다) 재검사(2차) 결과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된 급수시설
 - 폐쇄조치 또는 청소용으로만 사용
 - · "음용불가" 표시 안내문을 부착하여 절대로 음용하지 못하게 할 것
 - · 상수도(마을상수도) 인입 및 급수원 재개발, 정수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
- 라) 수질검사(정수기 포함)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6) 참고사항

(수질검사 시료 채수방법)

- ①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는다.
- ② 물을 약 3~5분간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린다.
- ③ 신문지의 화염 등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멸균 시킨다.
- ④ 수도꼭지를 열어 다시 적당량을 흘려보낸다.
- ⑤ 무균채수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세척한다.
 - 판매용기는 세척 필요 없으며, 대형약국, 화공약품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음
- ⑥ 세균오염에 주의하며 용기에 가득 담아 밀봉 및 봉인한다.

※ 주의사항

-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의뢰당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 한다.
- 물을 끓이거나 채수병에 소독약을 직접 주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우려해 다른 물을 대신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다.

❖ 수질검사 결과 표지판 설치

	수 질 검 사 표 지 판							
			E 1	<u> </u>	. ,			i
구	분	정	밀 검	사	간	이 검	사	
검사	일 자	201 년	월	일	201 년	월	일	
검사	기 관	00000			00000			
검사	항 목	일반세균외 45종			일반세균	군외 5종		
검사	결 과	먹는물로	· 적합 -	판정됨	먹는물로	르 적합 -	판정됨	
관 리	l 자	직 :			성명 :			
			0 0	0 학교	2 장			

◈ "음용불가" 표시 안내판 예시문

경 고 문(안)

이 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부적합(부적합 내용 기재)하여 여러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별도의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 물을 직접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학교장

나. 상수도·지하수 병행학교 판별검사

- 1) 관련근거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 2) 검사대상 : 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
- 3) 검사방법
 - 가) 각급 학교(공·사립 포함)를 대상으로 사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병행 사용 학교 전체 점검 실시
 - 나) 잔류염소분석 KIT를 이용한 상수도, 지하수 판별검사
 - ※ 상수도는 염소소독을 하므로 잔류염소가 존재해 색이 변하나, 지하수 는 잔류염소가 없어 색이 변하지 않음
- 4) 검사시기 : 2015. 4월 ~ 6월 중
- 5) 검사기관 : 대상학교에 대하여 지역교육지원청별 자체 검사 실시
- 6) 검사 후 지도사항
 - 가) 학교 음용수(정수기 연결수, 싱크대, 세면대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배관을 상수도로 연결하도록 시정 지도

다. 지하수 관리사항

- 1)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근지역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의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 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 2)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 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
- 3)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매분기 브롬산염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최소 및 제거 대책 마련 후 사용
- 4) 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 사용하는 학교는 반드시 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

- 5) 노후 급수관 교체 및 파손된 급수전, 급수대는 즉각 보수 조치
- 6) 급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독, 시설수리, 오염원 제거 등 지속적인 급수위생관리 실시
- 7) 급수시설 주변의 오염원이 없도록 유의하고, 신규설치 및 개·보수시에는 오염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
- 8)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토록 하여 학생들에게 안정된 식수 공급
- 9)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 10) 지하수를 먹는 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해야 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5 2항)

O 정수기 등 관리대책

가. 학교에 정수기 설치 제한

- 1) 각 급 학교에서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 2) 교과교실제 사업 및 각종 현대화사업비 집행 시 사용 인원 및 적정 용량의 검토 없는 정수기 구입 제한
- 3)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업무로 인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나. 정수기 수질검사

- 1) 관련근거: 「먹는물관리법」제5조
- 2) 검사대상 : 학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정수기
 -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 축열식 물끓이기 기구 또는 음수기도 저장탱크나 필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 3) 수질검사 유의사항
 - 가)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시료변경, 수질검사 직전 염소계 약품 투입 등 금지(염소검출 시 수질분석기관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 청에 통보)
 - 나)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이후 최소 7일 이상 경과 후 실시
 - ※ 채수 시 정수기 관리카드에 기록을 확인 최근 7일 이내 방문기록이 있을 경우 채수일자 변경조치
- 4)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
 - 가) 정수기 수질검사 의무화 : 분기 1회
 - 나) 조사항목 : 환경부가 제시한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 10. 30)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정수기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총대장균군과 탁도를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관리하게 규정
 -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할 경우 정수기 수질검사 시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검사 실시
 - 다) 수질검사 수수료 : 9,200원
- 5) 검사결과 조치사항
 - 가)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u>즉시 음용불가 표시 안내 및 음용하지</u> <u>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u> 정수기 청소 및 필터교체 등 자체 조치 후 재검 실시: 재검결과 적합 판정 시 음용
 - 나) 수질검사 재검 결과 부적합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 또는 교체 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u>직전 4회 검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이 된 경우</u>)
 - ※ 1차 재검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 즉시 철거 후 결과 보고 【보고서식 3호-3】
 - 다)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가 검출된 정수기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수기에서 정상적으로 채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 정수기 관리사항

- 1) 정수기 필터에 농축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1~2ℓ정도 통과시킨 후 사용
- 2) 정기적인 필터교환 및 청소·소독을 실시하며, 업체 위탁 시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기록·확인 할 것 【참고자료 2】

- 3) 정수기 꼭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공동 컵 사용 금지
- 4) 냉·온수기에 꽂아 사용하는 먹는 샘물의 경우 샘물 교체 시 유입구가 오염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냉·온수기를 깨끗이 세척

O 저수조(물탱크) 관리대책

가. 저수조(물탱크) 청소

- 1) 관련근거: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 3, 제22조의 5
- 2) 청소 실시 및 횟수
 - 가) 음용 저수조(물탱크) :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 나) 비음용 저수조(물탱크) : 연 2회(반기별 1회) 실시(삭제)
- 3) 청소 방법
 - 가) 저수조 청소대행업자 실시 : 저수조 청소대행 등록업체에서 실시하고 청소 · 소독 완료필증 비치
 - 나) 자체실시(교직원 등) : 자체실시 근거자료를 비치하고 청소 과정의 전・중・후 사진(날짜 기록) 첨부

나. 저수조(물탱크) 관리 요령

- 1) 학교장은 저수조(물탱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비치할 것
 -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참고자료 3】
- 2) 물탱크에 뚜껑 설치 및 시건장치를 하고 "관계자외 접근금지" 표식을 부착
- 3)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해야 함(「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5 2항)

□ 행정사항

- O 모든 수질검사 대상 시료 채수는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또는 수질검사기관 채수자가 직접 채수·봉인한 후 수질검사 기관에 분석의뢰
- 학교 먹는 물 급수시설 변경 및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 보고 철저 가.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학교가 분기별 수질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나. 급수시설 변경 및 부적합 수질검사 조치결과 보고 【보고서식 2】, 【보고서식 3】
- 학교 먹는 물(지하수, 수돗물, 정수기 물)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철저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자체계획에 따라, 지하수 및 정수기에 대한 표본 수질 검사 및 먹는 물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임: 2015. 3월~ 12월
-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전체 정수기 중 10% 이상 정수기에 대하여 연중 1회 이상 불시 자체 표본 수질 검사(특별점검) 및 학교 먹는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 할 것
 가. 점검기간 : 상반기 2015. 3월 ~ 6월, 하반기 2015. 9월 ~ 11월
 나. 점검대상 : 2014년 부적합 횟수가 1회 이상 있었던 정수기가 있는 학교를
 - 중심으로 불시 표본 검사 실시
 - 다. 중점 점검사항
 - ▶ 정수기 관리실태 : 필터 적기교체여부, 위생관리 실태 및 수질검사 실시 여부
 - ▶ 정수기 표본검사 실시 :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 ▶ 저수조(물탱크) 관리실태 : 청소 실시 현황, 위생점검부 비치 및 작성 상태
 - ▶ 옥내급수관 일반검사 실시 여부
 - ▶ 지하수 관리실태 : 수질검사 실시여부, 정수시스템시설 설치 여부 등
 - ▶ 자체 표본 수질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 제출**【보고서식 4】
- O 상수도·지하수 병행 사용 학교의 음용수 관리 철저
 - 지속적인 자체 판별검사를 통하여 상수도 및 지하수 여부 확인 철저

- 학교 음용수(정수기 연결수, 싱크대, 세면대 등)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 배관을 상수도로 연결
- 지하수의 경우 반드시 화장실 또는 청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먹을 수 없는 물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빨간색) 부착, 양치 및 피부 접촉 금지
- O 학교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별 책임 있는 관리 필요
- O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부실관리 등의 문제는 '12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 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및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 강구(의도적 부실관리 확인 시 인사조치 또는 징계 등 적극 조치)

2.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유지 · 관리 강화

□ 기본방침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관련 법령(지침)

- O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O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4호, 2012. 9. 23】
- O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1320, 2006.3.15.】

□ 현황

- 기존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교실의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항목과 항목별 측정시기 등을 차등하여 적용
 - 교사(校舍)내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2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2014년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기존학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측정비율
대상 학교	420	209	132	11	772	100%
측정 학교	420	209	132	11	772	100 /6

- 기존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각급 학교별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실시하였고, 최종 검사(3차)에 부적합 학교는 없었으나 주로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등이 1차 측정 결과 부적합으로 주로 나옴.
- O 신축(증·개축)학교는 실내 공기질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개별유기화합물(VOCs)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정기적인 교실 환기, 휴일과 방학을 이용한 Bake-out실시, 비품 구입 시 친환경제품 사용 등 저감 조치 강구
- ※ 베이크아웃(Bake-out) : 실내온도의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 재료에서 방출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환기를 함으로서 이를 제거하는 방법

모든 창문을 닫고 난방 온도를 30~40℃에서 6시간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시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실시

O 2014년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신설, 신축 및 증·개축 학교)

- 신 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대	상학교수	1	1			2
7년 7년	3월 개교	1	1			2
점 학교수	9월 개교					
4111	계	1	1			2

- 특별점검(신축 및 증·개축)

Ŧ	²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학교수	2	1	2	1	6
이내	점검학교수	2	1	2	1	6
증·개축	대상학교수	9	2	2	0	13
े जि.भ <u>ा</u> स	점검학교수	9	2	2	0	13
합계	대상학교수	11	3	4	1	19
집 계	점검학교수	11	3	4	1	19

- O 최근「학교보건법」상 교사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질 개선 명목으로 공기살균기 등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 ('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 O 최근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校舍)내 라돈 관리의 중요성 증가

□ 추진방향

- 교사(校舍)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운영 (업무형편에 따라 복수지정 가능,「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3)
 -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은 각급 학교에서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 위생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 O 학교 환경위생 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 철저
 - 지역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 관내 모든 학교 : 국·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15년 신설학교 포함)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 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실시, 별도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 교실은 담임교사, 기타 시설 및 장소는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 【별표 2】참조
 -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전문측정기관에 측정의뢰 실시
 - · 점검항목 : 환기, 채광 및 조도, 실내온도 및 습도, 소음,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 ☞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별표 1】참조
 - · 점검시기 : 하절기(3월 ~ 하계방학 전까지), 동절기(9월 ~ 동계방학 전까지) ※ 전문기관(검사 대행기관) 공기질 측정 검사의뢰 및 점검시기 완료 기일 (하·동계 방학전까지)을 준수하여 보고기일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할 것
 - · 공기질 측정 후 기준초과 항목 발생 시 반드시 저감조치 실시 후 2, 3차 재측정 의뢰

- 특별점검 : 학교를 신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을 하였거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측정기관에서 실시
- 라돈의 경우 지하교실에서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라돈의 농도가 높아 1층 이상의 교사 내 라돈 농도의 검검이 필요한 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라돈 측정 포함 검토(의심 지역 학교의 경우 등교 직후 및 수시 환기를 통해 라돈농도 저감 조치 필요)
 - ※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책자 활용 (도교육청 홈페이지/인성건강과 홈페이지/과자료실/355번)
- O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점검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특히, 공기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계적 보조장치 설치 금지
 - 기계적 보조장치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사전 전문가 자문 을 거쳐 결정하고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정·설치
 - ※ 학교 교사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준수 철저(인성건강과-10720, 2011.12.15)
- O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시에는「학교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적합 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 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설계 단계부터 확인)
 -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 알림(교육시설과-2982, 2008.6.5 참조)
 -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및 「학 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 질 측정
 - · 측정항목 :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 단, 개별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 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후 권고기준 초과여부 확인
- · 벤젠(30μg/m³ 이하), 톨루엔(1,000μg/m³ 이하), 에틸벤젠(360μg/m³ 이하), 자일렌(700μg/m³ 이하), 스티렌(300μg/m³ 이하)
- ※ 특히, 기숙사를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반드시 개별유기화 합물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초과여부 확인(100실 이하 2지점, 100실 이상 3지점, 이후 100실 초과시 1지점 추가)
- 측정기관 : 신축(증·개축) 당해 년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
- 공기질 측정시에는 반드시 교육기자재(책상, 걸상 등)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실시
 - ※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4호, 2012. 9. 23) 제1장 제5호 나목 참조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교사(校舍) 사용
- O 학교 교사(교사)내 공기질 관리 강화추진
 - 「학교보건법시행규칙」개정 추진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강화
 - ※ 라돈 : 지하교실뿐만 아니라 라돈발생이 의심되는 교실로 점검대상 확대
 - 특히, 라돈의 경우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라돈농도의 저감이 확인된 만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라돈 농도 관리 추진
 - ※ 학교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라돈가스 저감공법 등으로 설계 추진
 - ※ 환기장치 설치, 균열부위 메움, 창문 개방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조치
- O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각 지역교육청별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 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 행정사항

- O 환경위생 점검결과(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공기질 측정 등 포함)보고 철저
 - 2015년 환경위생 점검결과는 NEIS 및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보고(서식 5 참조)
 -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입력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초·중·고·특수학교(국·공·사립)
 - · 제출방법 : NEIS 입력 제출
 - · 제출일 : 각급 학교(상반기 6.22, 하반기 12.15) → 지역 교육지원청(상반기 6.30, 하반기 12.29) → 도교육청
 - ※ 해당 학교에서 직접 NEIS 입력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 제출 자료를 취합・검토 후 도교육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바, 점검결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 실시 후 입력할 것
- O 환경위생 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공기질 측정 등 포함)관리 철저

- 학교

- 자체 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1차 점검결과 기준치 초과학교는 개선 대책 마련
- · 특히, 특별점검 대상학교(신설,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학교 등)은 점검이 누락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시

- 교육지워청

-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환경위생 점검 지도 감독 철저
- 1차 점검결과 기준치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 실시 및 대책 마련
- 자체계획 수립 후 환경위생 점검 관리실태 현황 등 파악 및 관련 자료 관리 철저
- · 특히, 특별점검 대상학교(신설,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학교 등)의 점검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 2015년 학교 환경위생 점검(공기질 등) 계약체결 현황 및 학교 환경위생 점검 분석결과 제출 : 추후 별도 공문 통보 예정

3. 학교 소음방지 관리

□ 기본방침

- O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 O 성장기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현황

- O 학교 외부소음이 관련규정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공소음 피해학교
 - 군 비행장 및 사격장 등은 공중소음 등의 특성으로 방음시설에 한계
- O 외부소음과는 별도로 학교환경위생 점검 시 교사(校舍)내 소음을 측정한 결과 2014년도에는 기준초과 학교 없음

□ 추진방향

- O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추진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 지원청 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이 필요한 학교는 전문 측정 기관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등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소음·진동관리법」제29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항공법」제107조(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등)
 -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지원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 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 O 학교 교사(校舍)내 소음 측정은 학교 환경위생점검 시 공기질 측정과 병행하여 학교별로 전문기관 측정 의뢰 실시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

□ 기본방침

O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등 관련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현황

- O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 추진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관리되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시스템 통합구축(한국교육개발원 통합관리)
- O 교육환경평가서의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지원시스템 구축·운영('15.1월 이후)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사전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최적의 학교용지 선정 가이드라인 제공 및 평가서 전문검토 등 효과 기대
- O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례화
 - 교육부, 국민안전처, 여가부, 경찰청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및 적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ㆍ정보 공유
- O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근본적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보호 위원회 운영·학습환경조사 제도 운영 미흡
 - 학교 주변 학습환경 피해 유발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 전문가 그룹 활용 등을 통한 학습환경 보호기능 강화 필요('13년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 추진방향

-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 철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철저

- · 설정·고시 대상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학교설립 예정지 포함)
- 설정범위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는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 으로부터 사방 직선 50m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 200m까지의 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 학교설립 예정지를 결정 · 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장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
 - 학교설립 인기부서(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등) 에서는 인가사항을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부서(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 의무화
 - 각급학교(고등교육기관인 대학 포함)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 설정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필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관련 자료를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교주변 토지이용 정보제공 및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등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화구역제도 홍보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정화구역 조정 고시 철저
 - 학교부지의 매입, 매각 등으로 학교의 부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화구역 변경공고 실시
- ☞ 대학 부지 내에 초·중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학교 급별 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이 다르므로 학교별로 정화구역을 설정 ·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의 누락 및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O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3월, 9월 예정)시 적극 협조
- 정기점검
 - · 정화구역 설정권자(교육장) : 연 1회 이상(반드시 점검계획 수립)
 - · 정화구역 관리자(각급 학교장, 유치원장 포함) 연 2회 이상 순회 점검 실시하고 변동사항을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
- 수시점검
 - · 정화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점검결과 처리
 - · 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 점검결과 학교 학습에 피해를 주거나 불법사항 발견 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통보 (불법사항 발견 시는 직접 행정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
 - 지역교육지워청 학습환경 저해내용을 허가(등록・신고)기관에 통보(정화요청)하거나 학교보건 법상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신·변종업소 등 자유업종에 대해 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자치단체 등과 공유
- 정화구역 실태점검 시 업태위반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조치
- 학교별로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정화구역관리도 비치
- 학교주변 주요상가 건물 등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식"부착 및 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제도 홍보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행정 조치 요청
- 여성가족부 고시업종(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등), 자유업종 무단설치로 인한 학교보건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등록 시 교육지원청에 심의여부 확인 요청 협조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O 교육환경평가제도 검토기능 강화
 -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는 반드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보
 - ※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한 한국교육개발원 및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검토기간 준수(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요청→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회신)
 - 교육환경평가지원시스템은 한국교육개발원(운영관리 협약체결)에서 통합 관리 하며 시·도교육청별 운영(접수 및 검토 등)
 - ※ '15.1월 이후 접수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는 교육환경평가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서면 제출 병행)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회신시 보완조건 명확화 조치 (조치결과에 대한 자체조치 또는 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등)
- 재평가 대상
 - · 평가 완료 후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 평가 완료 후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100이상 증감되는 경우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학교설립예정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전까지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예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교육환경평가 업무 흐름도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작성) (학교설립자, 도시계획입안자, 사업시행자) 尣 교육환경평가서 접수 (교육감) 仚 정화구역 위반 검토요청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교육장→학교환경위생정화 (교육장, 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 \Rightarrow 위원회) Û 仚 정화구역 검토 결과 통보 교육환경평가서 취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교육감(인성건강과)] 교육장) 尣 교육환경평가서 제안 설명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상정 (교육감(인성건강과)) [교육감(인성건강과)] \Rightarrow ※필요시 교육장 설명 尣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학교보건위원회, 적합여부 尣 대안 · 조건 통보 시 교육환경평가서 결과통보 (교육감, 교육장) (교육감→학교용지선정자) \Rightarrow Û 仚 대안・조건 반영결과 제출 대안・조건 이의신청 (학교용지 선정자) (학교용지 선정자)

30일 이내 통보 (교육감·교육장→학교용지선정자)

다.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제도 운영 철저

- O 학습환경보호계획 수립 등 사전 보호조치 강화
 -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포함될 경우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학습환경조사를 통한 학습환경 등 지장 초래 유무 사전 확인·조치
 - 학교급별 학습환경 조사자
 - · 교육장 : 유치원, 초·중학교, 고, 특수학교

O 학습환경조사 철저

- 재개발 · 재건축 지역 인근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 학습환경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노력 필요
-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 통학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및 자치단체와 협력
- O 학습환경 조사 기준 및 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제20조제4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9조(별표8 참조)

조사항목	기 준			조사방법 및 내용
소음 및 진동기준	구분 소음[dB(A)] 진동[dB(V)]	주간 (07:00~ 18:00) 65 이하 70 이하	야간 (18:00~ 07:00) 50이하 65이하	1) 측정점: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2)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조사항목	기 준	조사방법 및 내용
비산먼지 (미세먼지를 포함한다)	1)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 표14 및 별표15의 준수여부 2)미세먼지(PM-10)의 경우, 24시간 평 균 100 μ g/m³이하)	1) 조사내용 : 정비구역 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 2) 조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14 및 별표15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현장 점검 요청 3) 측정점 : 학교부지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 4) 측정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교통안전	1) 학교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자전거보행 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 제1항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충분한 넓 이로 설치하였는지 여부 2)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 및 제10 호의 차도 및 보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이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 치하였는지 여부 3)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했는지 여부	1) 조사내용: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2) 조사방법: 교육감으로부터 의뢰 받은 외부 기관 또는 교육감 소속 공 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
일조량	1)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 조권에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 2)교사 및 체육장의 일조량이 해당 교육 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 인지 여부	1) 조사내용: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대학교 또는 정부출연 기관 등 의 기관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시뮬레이션)에 따를 것, 예측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

< 정비구역내 학습환경 보호 절차 >

교 육 감

① 학습환경조사

- 정비구역내 학교
- 정비구역내 정화구역 포함 학교 (교육장 위임)

 \Rightarrow

③요구사항 건의

 \Diamond

④조치사항 통보

시장·군수

-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인가 (시행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②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검토

□ 행정사항

- O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자료의 NEIS 활용 철저
 - 각종 현황 파악과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의 자료의 NEIS 입력 및 수기 병행 보고

(NEIS / 학교환경관리 /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서식 8】
 - : 2015. 6. 30, 2015. 12. 31(단위학교 입력)
- 학교 정화구역내 각종 업소 현황 【서식 9】
 - : 2015. 6. 30, 2015. 12. 31(단위학교 입력)

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기본방침

- O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유지
- O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 현황

- O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이 주변의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의 ·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 O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업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지역에서는 유해업소 설치를 합법화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추진방향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
 - 설 치 : 지역교육지원청
 - フ] 능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심의
 - ·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등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참고자료 3】참조
 - 구 성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위촉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 위원의 임기는 2년(공무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 1차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위원정수의 최소기준(13 명)에 미달되지 않을 때에는 정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합안내시스템을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 하여 학교주변 토이이용 정보제공 및 정화구역에 포함 여부 확인 등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화구역제도 홍보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합 관리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합안내시스템 적극 이용 ※ 향후 심의현황 등 주요통계는 시스템 내 통계 추출 사용 예정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시 정화위원들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교육환경 저해요인 판단 기회 부여
- 정화위원회 심의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학부모 참관 조치. 민원인의 기피 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극 준수
 -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교육부훈령 제113호, 2014.8.28.)적용 시설에 대한 심의 절차 등 고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교장 의견 적극 반영

- 정화위원회 심의 시 가급적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장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 의견 적극 반영
- 현장조사 내용을 근거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학교장 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로 인하여 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 초래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허용결정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 강구

○ 건축 및 영업 인·허가(등록·신고)전 사전 심의제도의 정착

- 인·허가(등록·신고) 업무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건축·영업허가(등록·신고)후 사후심의에 따른 민원유발 및 재산피해 사례 방지
- 인·허가(등록·신고) 행정기관의 민원봉사실, 건축설계 사무소, 관련협회, 반상 회보 등에 안내 및 홍보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행정심판·소송 수행 시 적극적 대응

- 정화위원회 심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정화위원의 현장 확인(실사) 및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 억제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관련 회의록 등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 · 유지하여 충분한 근거자료 제공
- 소송담당 부서와 업무담당 부서간의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 유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및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제도 및 심의위원으로서의 전 문성 함양,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한 연수 등 개최(연 1회 및 위원 교체 시)
- 교육환경 보호제도 및 정화구역관리, 정화위원회 심의업무 처리요령 등에 대 한 담당자 교육실시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대민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 On-Line 서비스 운영
 - 민원인이 해당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심의 신청

- ·교육지원청 방문 등에 따른 불편 해소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민원인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
 - 민원상담은 담당부서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상담을 하고 불필요한 접촉 금지
 - · ONE STOP 민원처리 : 민원서류 보완은 FAX, 이메일 및 우편 등의 활용으로 민원인 재차 교육지원청 방문금지
 - · 민원인과의 상담 시 친절한 자세로 재차 담당부서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 로 자세히 안내하고, 교육지원청홈페이지에 정화구역제도 홍보내용 게재
- 민원인에게 정화구역 제도 홍보
 - · 방문한 민원인 및 민원결과 회신 시 정화구역 제도 안내, 정화위원회 심의처리 과정, 이의제기 방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공무원의 청렴 유지 사항, 부패 신고 협조 등의 홍보자료 배부
- ☞ 민원서류 대리 신청 시 실제 민원인에게 유선 등으로 심의제도 적극 안내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진행 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 ·제공방법 : 문자알림 서비스 또는 이메일
- ·제공시기 : 결과통보 예정일(접수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일 등
- ☞ 예시문
 - ◇ 귀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한 결과는 00월 00일 통보될 예정입니다.
 - ◇ 귀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한 결과는 00월00일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행정사항

- O 정화위원회 심의대장 관리 : 심의결과 민원인 통보시 NEIS 등록 병행
- 2015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소송현황 보고 : 2015. 2.20 【서식 6】

6.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기본방침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 및 불법운영 방지를 통한 학교 학습환경 보호 유지

□ 현황

- O 지역교육지원청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업소 형식적·소극적 지도단속
- 학교교육활동에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학교 구성원들의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의지 부족

□ 추진방향

- O 학교장(정화구역 관리자)의 정기점검·홍보 강화
 - 학교실정에 맞는 점검반 운영(교직원, 학교운영위원등 학부모 포함)
 -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점검 방지를 위하여 계도문, 점검활동 영상물, 점검 일지 기록 등 실적물을 보존하고 활동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홍보
 - 교육수요자 및 지역민 홍보 강화(가정통신문 발송,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설명회시 학부모에게 정화구역 제도 소개)
- O 교육장(정화구역 설정자)의 민관 합동지도단속 강화
 - 인·허가기관 등 유관기관, 도교육청, 교육장, 시민단체 등 인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민·관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시군별 교차단속 실시 방안 등으로 단속의 효과성 제고
 - 불법사항 적발 시 인·허가기관에 정화요청 등 적극 대처
- O 업주 계도문 배포

□ 2014 추진실적

- 민·관 합동 지도단속 실적
 - 기간 : 2014년 3월~12월
 - 단속실적 : 20회
 - 단속반 구성 규모 : 7~10명(도교육청 관계자, 지역별시민단체, 학부모,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 경찰 등)
 - ·점검대상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단속 연인원/대상업소 수 : 202명/170개소
 - 조치결과 : 시정 2건

□ 2015 추진계획

- O 정기점검
 - 정화구역 관리자(학교장) : 연 2회이상 실시
 - 정화구역 설정자(교육장) : 연 1회이상 실시
- O 수시점검(단속)
 -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외에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민·관 합동 단속반 구성하여 실시
 - ·단속반 구성 규모 7~10명 【도교육청 관계자 2명, 지역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시·군공무원, 경찰】
- O 단속결과의 조치
 - 불법사항은 주관기관이 인·허가 기관에 정화요청
 - 인·허가기관은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

□ 행정사항

- 지역교육지원청은 자체계획(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수립 후 2015.3.20.(금)까지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합동단속 실시
 - 도교육청과 합동단속은 단속반 구성 후 실시 7일전에 일정을 협의(유선) 하고 단속계획을 인성건강과로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활동실적은 반드시 기록·유지 바람(활동사진, 점검표 작성, 계도문 등)
- 상·하반기 민·관 합동단속 결과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6.30/12.31 【서식 7】
- O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 활동 전개
 - 위반사항 적발 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 되도록 조치
 - * 고발 요령 및 절차 : 【참고자료 4】참조
- O 점검(단속)실적 보고는 NEIS 입력 및 수기보고 병행 【서식 8】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현황
 -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현황 등록, 각종 업소등록, 정화요청 및 고발 현황 관리, 고발업소 명단 관리, 정비된 업소 현황 관리
 - . NEIS 입력(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매월말 기준
 - . 수기보고(지역교육지원청) : 매 분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서식 8】

7.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 기본방침

- 2007년도 신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사업 추진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

□ 목적(배경)

- O 2007년도부터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어린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사업 추진
- O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 보호에 기여

□ 사업 대상 및 내용

- 2014년도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초 279, 특수학교 9 , 단설유치원 12 총300교
 - ※ BTL 6교(초 4교, 특 2교),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대상학교(초 129, 단설유치원 4)133교 제외
 - 지원기준 :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총 3.572.580천 원 지원

○ 2015년도 예산지원

- 지원대상 : 초 269, 특수 9, 단설유치원 13 **총291교**
 - ※ BTL 6교(초 4교, 특 2교),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대상학교(초 140, 단설유치원 5) 145교 제외
- 지원기준 :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6학급이하 또는 교사면적 4,500㎡미만 : 9,940천 원7학급이상 또는 교사면적 4,500㎡이상 : 13,000천 원
- 지원예산액 : **3,483,120천 원**

□ 행정사항

- O 학교(원)장은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월말까지 계약완료, 3월부터 사업시행
- O 학교 기본운영비(경상목적사업비)로 배부된 동 사업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O 학교별로 방학 중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가능
- O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한 학교별 자체평가 추진
 - 평가지표: 일자리 수/ 수요자의 만족도/ 학교의 청결지수 등

Ⅱ. 보고 사항

- 1. 보고 목록
- 2. 보고 서식

1. 보고 목록

ਧ – ਮੇ ਣੀ	보고	<u>1</u> 기한	보고	ય – ની કો	지정
보고사항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방법	보고대상	서식
학교 먹는 물 관리실적	분기별 수질검사 종료 후 5일 이내	분기별 관내학교 수질검사 종료 후 즉시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보고 (학교:NEIS보고)	초·중·고·특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1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실적	시설개선 후 즉시	시설개선 후 즉시	업무관리시스템	해당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2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재검결과 공문 접수 후 즉시	재검결과 공문 접수 후 즉시	업무관리시스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학교 및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3
정수기 특별점검 결과 제출	-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업무관리시스템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4
학교 교사내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실적	6.22(상반기) 12.21(하반기)	6.30(상반기) 12.28(하반기)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보고 (학교:NEIS보고)	초·중·고·특수학교 (*15년 신설학교 포함) 및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5
2015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소송현황	-	2016. 2. 20.	업무관리시스템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6
민·관 합동 단속 	-	2015. 3. 20.	업무관리시스템	지역교육지원청	
상(하)반기 민·관 합동 단속 결과	-	2015. 6. 30. 2015. 12. 31.	업무관리시스템	지역교육지원청	서식 7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추진 현황	매월 말 기준	반기말 기준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보고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대)	서식 8
학교 정화구역내 각종 업소 현황	매월 말 기준	반기말 기준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보고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대)	서식 9
정화위원회 심의대장 등록 관리	심의결과 민원인 통보시	심의결과 민원인 통보시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보고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대)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 현황 및 학교 정화구역내 각종 업소 현황

[:] 점검(단속)실적 보고는 NEIS 입력 및 수기보고 병행

⁻ NEIS 입력(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 매월말 기준

⁻ 수기보고(지역교육지원청) : 6.30, 12.31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서식 8】, 【서식 9】

2. 보고 서식

[서식 1]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반기/ 서면, NEIS 병행 보고) 기관명 :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	전체학교수					
	상수도(A)					
시설별 학교수	지하수(B)					
	상수도+지하수(C)					
1 4 TT	외부공급					
	계(D)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대상학교수(A)					
상수도	설치학교수					
이용교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B)					
지하수	설치학교수					
이용교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상수도	대상학교수(C)					
지하수	설치학교수					
공 동	설치저수조수					
이용교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D)					
계	설치학교수					
Z'II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정수기 설치학교수					
	검사 대상 정수기수(A)					
	검사 정수기수 (B=C+D+E)					
()분기	1차 적합판정수(C)					
() E / I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정수기 외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대상 학교수(A)					
	검사 학교수 (B=C+D+E)					
()분기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서식 2]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실적

1. 지하수 신규개발(정수시스템 설치 포함)

급별	친그먼 침계스		한생수 · · · ·		내용	급식조리여부	
<u> </u>	当年で	학교명 학생수 신고		신규개발	정수장치	합격조디역구	
						조리교,	
						비조리교 등	

※ 공사내용 : 해당내용에 ○ 표시

2. 상수도 인입(간이상수도 포함) 완료 보고

급별	학교명	학생수	인입공사 완료일	급식조리여부	비고

※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는 상수도 인입공사 완료 시 보고 간이상수도의 경우 비고란에 별도 표기

3. 상수도 직결급수 완료 보고

급별	학교명	학생수	직결급수 완 료 일	개선내용	급식조리여부
					조리교, 비조리교 등

※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지 않는 직결급수 완료 시 보고

[서식 3]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1.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학교명	학급	학생	지하수	조리교	처리시설	통보	조치	조치	향후
	수	수	음용여부	여부	설치 내역	일자	일자	내역	계획
					자동염소투입기, 살균시스템 등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안내」체육보건교육과-20102(2009.10.05) 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작성

2. 정수기 수질 재검사(1차) 결과

	1차 부적합	재검사	재검사	재검대상	재검			
학교명	정수기 조치내역	세점사 의뢰일		정수기수	적합 정수기수	부적합 정수기수	비고	

3. 부적합에 따른 정수기 철거 현황

ਲ <u>ੀ</u> ਦਾ ਸਮੇ	정수기	;	비고		
학교명	정수기 총 보유 수	설치 장소	대수	철거 일자	비끄

[※] 부적합 판정 시 제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정수기 특별점검 결과(분기)

기관명: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구분	초	중	고	기타	합계
		특별점검 학교					
		특별점검 정수기수					
	袞	검결과 부적합 정수기					
00		정수기 폐기조치					
(지역)		수질검사시기 조정 조치					
	후속 조치	채수구 등 청소상태 시정조치					
		설치장소 시정조치					
		기타					

^{※ &}lt;u>반드시 엑셀로 제출,</u> 지역교육지원청만 해당,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제출

[서식 5]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반기/ 서면, NEIS 병행 보고) 기관명 :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1. 정기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점 검	실내환경					
	공 기 질					
학교수	일반환경					

※ 작성요령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점검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4호) 제2호의 '실내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7-1 7-1	학교자체					
점 검	11/ 斉 久					
기 관 (일반)	외부기관					
(ㄹ먼 <i>)</i> 	계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외부기관은 전문대행기관임)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	학교	중호	학 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7	1
T 它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PM10 (μg/m³)										
CO ₂ (ppm)										
HCHO (μg/m³)										
총부유세균(CFU/m³)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 ₂ (ppm)										
Rn (Bq/m³)										
TVOC (µg/m³)										
석 면 (개/cc)										
오 존 (ppm)										
진드기 (마리/m²)										

※ 작성요령 :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2. 특별점검 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건독3년 이대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8.744	점검 학교수					
기 타	대상 학교수					
1 4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3. 신설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대싱	학교수					
점 검	3월 개교					
	9월 개교					
학교수	계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	학교	중호	학 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7	1
一 T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HCHO (μg/m³)										
TVOC (µg/m³)										
벤 젠 (μg/m³)										
톨루엔 (μg/m³)										
에틸벤젠 (μg/m³)										
자일렌 (μg/m³)										
스티렌 (μg/m³)										

- O 환경위생 점검결과(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공기질 측정 등 포함)보고 철저
 - 환경위생 점검결과를 NEIS 보고
 -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입력 제출 사항
 - · 제출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지역교육지원청 취합·검토)
 - · 제출방법 : NEIS 입력 제출(메뉴얼은 인성건강과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 · 제출일 : 각급 학교(상반기 6.22, 하반기 12.21) → 지역교육지원청(상반 기 6.30, 하반기 12.28) → 도교육청

※ 하반기 보고 시 상반기 포함 누계 보고

※ 해당 학교에서 직접 NEIS 입력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 제출 자료를 취합·검토 후 도교육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바, 점검결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 실시 후 입력 할 것

[서식 6]

2015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소송현황

일련	선고일자	파	A.I.	i I	څ١	μΙЭ
번호	및 사건번호	판	^	1^	항	비고

○○법원 년월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휴먼고딕 12>

【판시사항】<휴먼명조 10 진하게>

[1] <휴먼명조 10>

[2]

【판결요지】

[1]

【참조조문】

[1]

【참조판례】

[1]

【항소(상고)포기사유】

[1]

<작성요령>

- 작성대상 : 사건별로 최종심부터 최초심(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작성
 - 동일사건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행정)법원 순으로 모두작성
 - 지방(행정)법원 판결 또는 고등법원에서 종결된 사건 중 지역교육지원청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항소(상고)포기 사유 요약 및 공문사본 첨부
- 사건별 별지로 작성 후 1부 출력 후 판결문 사본 첨부(화일 별도송부)
- B5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말, 꼬리말 10, 문단 : 좌우 상하 0)
 - 양식 및 글자크기, 형태 임의변경 금지
- ※ [대법원에서 발행한 판례집]이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home > 사법정보광 장 >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 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서식 7]

2015. 상・하반기 민관합동단속 결과

○○교육지원청

	단속반 참여인원						
단속일시	경찰공무원	시·군공무원	시민단체등	교육지 원청	계		
2015.00.00. 00:00 ~ 00:00							

		단속업소수	비고	
고발	영업정지	계	인독립조각	11 1/2

※ 첨부서류 : 출장복명서 및 관련사진

[서식 8]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반기 / 서면, NEIS 병행) 기관명: 교육지원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순회점검 실시

		식시대상	전건식시	참 여 _		활동 내	용(건수)		
	구 분	실시대상 학 교 수	점검실시학 교수	인	원	유해업소 신고(통보)	불량광고 벽보제거	업소계도 전단배포	계
	정화구역								
	관리자								
반기	정화구역								
	설 정 자								
	계								
	누 계								

※ 작성요령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 실시대상 : 정화구역이 설정된 모든 학교
- 실시회수 : 교육감이 정한 회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 활동내용 :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 정화구역 관리자 실시대상 학교수 란은 관내 대상 학교수 전체(설립예정자, 대학포함) 를 기록하고 실시학교수는 자체적으로 순회점검 실시한 학교수 및 실적기록
- 누계까지 통계에 착오없도록 정확히 기재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위반사례 -	통보처	
	구 분	통보건수	교육지원청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시·군·구청
	서면통보					
반기	유선통보					
	계					
	누 계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실적

구브	시이거수	해?	제	금	지	전체정화위원
7 正	겹의신T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현장방문건수
반 기						
누 계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구 분	행정공무원	경 찰	교육지원청/교직원	학부모/기타	계
반 기					
누 계					

4-2. 적발내용

구 분	퇴폐·변태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묵인	준수사항 위반등	계
반 기					
누 계					

4-3. 위반업종별 현황

구 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 반 음식점	게임관련 시 설 등	노 래 연습장	만화가게	비디오물 관련시설	기타업소	계
반 기								
누 계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구 분	고 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시정	계
반 기					
누 계					

[※]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교육지원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4-5. 퇴폐·음란물 압수/폐기 실적

구 분	게임관련시설		만화가게		비디오물관련시설		문구점/기타		계	
1 1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반 기										
누 계										

^{※ 4-2, 4-3. 4-4, 4-5}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이전 · 폐쇄대상업소 현황 및 정비실적

5-1. 학교보건법상 정비대상 업소현황

	7 H	유치	시원	초등	학교	중학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학	(교)		계	
	구 분			절대										절대	상대	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3	도축·화장· 납골시설															
4	폐기물 수집장															
5	유흥・단란주점															
6	호 텔															
7	여 관															
8	여인숙															
9	당구장															
10	전용게임장															
11	만화가게															
2	소계(′95년말까지)															
_	무도학원/무도장															
13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2	소계(′98년말까지)															
15	전화방															
16	성기구취급업소															
	소계(즉시)															
17	비디오물감상실															
2	소계('02년말까지)															
	멀티게임장(PC)															
	소계('04년말까지)															
	경륜·경정장															
	노계('09년말까지)															
	미니게임기															
	소계(′08.8.4까지)															
	신변종 업소															
	· 소계(′11.7.20까지)															
	합계															

[※] 현재 미정비 잔여업소에 대하여 작성(무단설치업소 제외)

5-2.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정화요?	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구 분	정화요청 건 수	1 기막거수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정화구역조정	계		
반 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cd vil	⊐ HFQ] →]	고발자	ul =1	고발내용				
연번	고발일자	(기관명)	고발처	업소명	업주명	위반내용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정비기한별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관리학교명	정비일자	조치내용
1995.12.31							
1998.12.31							
2002.12.31							
· ·							
2011.12.31							
2012.12.31							
2013.12.31							
즉시정비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 ☞ 모든 지정된 보고서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특히, 통계수치는 정확히 작성하여 집계 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 지정된 보고기일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기일 엄수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무단설치 업소 현황 및 정비실적

6-1. 무단 설치 업소현황

구 분		유키	치원	초등	학교	중호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학	(교)		계	
	T		상대			절대	상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환경기준초과															
2	제한영화상영관															
3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4	도축·화장· 납골시설															
5	폐기물 수집장															
6	폐기물처리시설															
7	가축사체처리장															
	전염병원등															
9	가축시장															
10	유흥・단란주점															
11	호텔, 여관 등															
12	당구장															
13	경륜장 등															
14	게임제공업															
15	인터넷컴퓨터															
16	증기탕															
17	만화가게															
18	무도학원 등															
19	노래연습장															
20	담배자판기															
21	비디오감상실															
22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화상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5	미니게임기															
	신변종업소															
	합 계															

※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대상업소 제외

6-2. 무단 설치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정화요	청/고발		이전	·폐쇄 조기	:치 건수 및 내용			
구 분	정화요청 건 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정화구역조정	계	
분 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서면, NEIS 보고)

기관명: 교육지원청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1	환경기준초과							
2	제한영화상영관							
3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4	도축·화장· 납골시설							
5	폐기물 수집장							
6	폐기물처리시설							
7	가축사체처리장							
8	전염병원등							
9	가축시장							
10	유흥 • 단란주점							
11	호텔, 여관 등							
12	당구장							
13	경륜장 등							
14	게임제공업							
15	인터넷컴퓨터							
16	증기탕							
17	만화가게							
	무도학원 등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감상실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화상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미니게임기 신변종업소							
20	합계							

※ 작성요령

-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대상만 작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이전 · 폐쇄대상 유해업소를 포함할 것

□ 참고 자료

- 1. 정밀검사 46항목
- 2. 학교내 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
- 3.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 4.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6. 고발요령 및 절차
- 7.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고시

【참고자료 1】

【정밀검사 46항목】

검사항목	기준	검사항목	기준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24. 비소	0.01mg/L이하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25. 셀레늄	0.01mg/L이하
대장균 3.	불검출/100ml	26. 납	0.01mg/L이하
5.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ℓ	27. 크롬	0.05mg/L이하
4. 경도	1,000mg/L이하	28. 알루미늄	0.2mg/L이하
5. 과망간산칼륨소비	량 10mg/L이하	29. 보론	1.0mg/L이하
6. 탁도	1NTU이하	30.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7. 냄새	이취없을것	31. 파라티온	0.06mg/L이하
8. 맛	이미없을것	32.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9. 색도	5도이하	33. 카바릴	0.07mg/L이하
10. 수소이온농도	5.8~8.5	34. 1,2-디브로모-3-클로로 프로판	0.003mg/L이하
11. 세제	0.5mg/L이하	35. 페놀	0.005mg/L이하
12.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36.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13. 불소	1.5mg/L이하	37.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14. 염소이온	250mg/L이하	38.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15. 질산성질소	10mg/L이하	39.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16. 황산이온	200mg/L이하	40. 벤젠	0.01mg/L이하
17. 시안	0.01mg/L이하	4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18. 철	0.3mg/L이하	42. 톨루엔	0.7mg/L이하
19. 망간	0.3mg/L이하	4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20. 동	1mg/L이하	44. 에틸벤젠	0.3mg/L이하
21. 아연	3mg/L이하	45. 크실렌	0.5mg/L이하
22. 수은	0.001mg/L이하	46. 1,4-다이옥산	0.05mg/L이하
23. 카드뮴	0.005mg/L이하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브롬산염 항목을 추가 검사하여야함

【참고자료 2】

학교내 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

□ 정수기 사용과정에서의 위생관리

- 정수기 설치에 부적합한 장소
 - ※ 총대장균군 및 탁도 등 수질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토출구를 사용자가 직접 만지거나 접촉금지 등 주의사항을 정수기 외부표면에 상시부착
- 교환 가능한 취수레버와 에어필터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환
- 정수기 내·외부 정기적인 청소·소독실시
 - 청소주기 : 6개월 마다
 - 청소소독방법 : 고온·고압 스팀소독,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 등
 - 청소소독의 주체는 관리자로 하되, 위탁 가능함
 - 정수기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 유지
- O 수조의 위생적 관리
 - 월 1회 이상 세척밸브를 열어 저장탱크의 물을 배수하고, 수조내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항시 청결유지

【참고자료 3】

정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〇, ×)	필터 교환시기	청소 • 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 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관리카드는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냉 · 온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〇, ×)	에어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 1. 냉 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 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2. 냉・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 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관리카드는 냉 온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4】

<u>저수조 위생점검 기준(</u>제22조의3 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 치 장 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실시일	

	1	-1 -1 1 -7	적 부
조	: 사 사 항	점 검 기 준	$(\circ\cdot\times)$
1	저수조 주위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의 상태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의 상태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	
	분의 상태	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1 & 41 41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frac{1}{2}$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상태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	
	관의 상태	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	
		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 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월 1회 점검, 점검자 기재, 2년 보관

【참고자료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	× 절대금지
_	△ 상대적금지시설
례	— 금지규정 적용제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구 분	초•경	중・고	유치원	·대학	비고
	丁 正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비끄
1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2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	Δ	×	Δ	
3	영화상영관(2008.8.31삭제)					
4	제한상영관	×	×	×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	×	×	
6	폐기물수집장소	×	Δ	×	Δ	
7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 산폐수배출.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	×	×	×	폐기물관리법26조
8	가축사체처리장/가죽가공.처리시설	×	×	×	×	
9	감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	×	×	×	
10	감염병요양소/진료소	×	Δ	×	Δ	
11	가축시장	×	×	×	×	
12	유흥주점/단란주점	×	Δ	×	Δ	
13	호텔/여관/여인숙	×	Δ	×	Δ	
14	당구장	Δ	Δ	_		헌재결정(97.3.27)반영
15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	Δ	×	Δ	-이상,95년말한 정비 -경륜장등'09.12.31한 정비
16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Δ		_	청소년/일반 게임장
17	게임물 시설	×	Δ	×	Δ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제외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Δ	×	Δ	
19	전화방. 화상방/성기구취급업소	×	×	×	×	
20-1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Δ	×	Δ	
20-2	만화가게	×	Δ	_	_	
20-3	무도학원/무도장	×	Δ	×	Δ	
20-4	노래연습장업	×	Δ	_	_	
20-5	담배자동판매기	×	Δ			
20-6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	×	Δ	_	_	-이상, 98년말한 정비

※ 상대적 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참고자료 6】

○○경찰서장 귀하

고발요령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학교	보건법 위	반 업소를	를 인지하면,	,	
① 고발의뢰서					
② 고발장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에 고발을 접수(우		,	구비해서 관	<u></u> 할 경찰서	민원실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	뢰서를 토대	개로 사실	확인 후 검침	<u></u> 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1 .	•	•		
C	0 교 4	육 청 교	육 장		

[예시2]

진 술 서

○ 소 속:

○ 직 명:

○ 성 명:

- 업 소 명 :

- 업 종:

- 업 주 명 :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201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7】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4호(2012. 9. 23)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오염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에 의한 시설 및 설비

3. 점검항목

- 가. 환기
- 나.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 다. 실내온도 및 습도
- 라. 소음
- 마.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
- 1) 기존학교

- 가) 미세먼지(PM10)
- 나) 이산화탄소(CO₂)
- 다) 폼알데하이드(HCHO)
- 라) 총부유세균
- 마) 낙하세균
- 바) 일산화탄소(CO)
- 사) 이산화질소(NO₂)
- 아) 라돈(Rn)
-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차) 석면
- 카) 오존(O₃)
- 타)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 2) 신축학교(증·개축 포함)
 - 가) 폼알데하이드(HCHO)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2) 벤젠(Benzene)
 - 3) 톨루엔(Toluene)
 - 4) 에틸벤젠(Ethylbenzene)
 - 5) 자일렌(Xylene)
 - 6) 스티렌(Stylene)
- 바. 폐기물
-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 아. 먹는 물
- 자. 상수도 및 하수도

차. 화장실

카.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사항

4. 점검종류 및 시기

가. 일상점검

- 1) 점검시기 및 횟수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 점검방법

별도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한다.

3) 점검자

교실은 담임교사가 실시하며, 기타 시설 및 장소 등은 규칙 제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점검

- 1) 점검시기 및 횟수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별표1과 같다.
- 2) 점검방법

제2장의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염여부 등을 확인 한다.

3) 점검자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검항목에 따라 관련법령이 정한 전문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측정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특별점검

- 1) 점검시기
 - 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나)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다)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점검방법 및 점검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에 따라 정기점검의 해당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점검방법 적용 등

- 가. 이 점검기준 중에서 오염물질 또는 배출허용 기준 등의 측정 또는 시험방법은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이 일반적인 오염정도 또는 배출량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방법이므로 그 이상의 정확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제1항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학교 교사의 공기질 측정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점검방법 및 기준

1. 일반사항

가. 환경조건

시료의 채취 또는 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측정 장소(교실 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과 온·습도 및 소음 등의 측정 장소(교실 수)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및 발 생강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환기·채광·조도·온습도 및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
 - 가) 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
 - 나) 오염물질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용시설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측정 장소 (교실 수)를 해당 시설내 1개소이상으로 한다.
 - 다) 신축 및 증·개축 학교 또는 교실내의 공기질 측정 장소(교실 수)는 위가 및 나)의 기준에 준한다.
- 2) 그 외 점검항목의 시료채취 또는 측정 장소(교실 수)는 점검항목의 특성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오염농도 또는 배출농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측정 위치

측정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실내기류 등을 고려하여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 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측정 시간

시료채취 또는 측정시간은 학생 수업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시료 채취량 및 측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시험(측정) 방법 등

- 1) 시험(측정) 방법은 각 오염물질별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시험결과가 각 항목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2.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된 주시험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실내공기질을 현장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때 사용되는 기기는 「다중이용 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2.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기준

가. 환기

- 1) 기계환기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감소량을 측정하는 간접 측정법 또는 풍속계 등을 이용한 직접측정법으로 환기량을 측정한다.
- 2)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교실의 환기는 창문의 개폐에 의한 환기상태를 점검한다.

나.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 1) 조도의 측정은 광전지 조도계의 규격(KSC-1601)에 적합한 조도계 또는 동 등 이상의 조도계를 사용하며, 교실의 조도는 학생의 책상면과 칠판면에서 측정한 후 각각의 평균조도가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2) 보는 것을 방해하는 광원, 광택의 유무를 조사하며,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다. 실내의 온도 및 습도

아스만통풍온·습도계, 디지털 온·습도계 등으로 측정하며, 교실내의 온도 는 섭씨 18~28도(난방온도 : 18~20℃, 냉방온도 : 26~28℃), 습도는 가능한 40~70%를 유지하되, 최소한 30~80%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음

소음계는 KSC IEC 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소음 환경조사에 의거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하여 학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55데시벨 이하 이어야 한다.

마.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1)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 농도를 광산란법 또는 광투과법이 적용된 분진측정기기로 현장에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100 μ g/m³)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소용량공기포집법(Mini volume air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질량농도를 산출한다.

2) 이산화탄소(CO2)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분산적외선분석법이 적용된 측정 기기로 현장에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자연환기의 교실인 경우에는 1,000ppm이하, 기계식환기시설이 설치된 교실의 경우에는 1,500ppm이하 이어야 한다.

3) 폼알데하이드(HCHO)

공기 중에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100 μ g/m³이하)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 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한다.

4) 총부유세균

충돌법, 세정법 및 여과법 등의 방법으로 부유세균이 흡착된 배지(여과지)를 배양하여 증식된 균 집락수가 800CFU/m³이하이어야 하며, 주 시험방법은 충돌법으로 한다.

5) 낙하세균

보건실 및 식당에 표준한천배지를 5분간 노출시킨 후 배양하여 증식된 균집락수의 평균값이 1실당 10CFU이하 이어야 한다.

6) 일산화탄소(CO)

개별난방 및 도로변 등 일산화탄소의 노출이 우려되는 교실에 대하여 실내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현장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 의 평균치가 기준치(10ppm)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시험방법인 비분산적외선법(자동)으로 측정한다.

7) 이산화질소(NO₂)

개별난방 및 도로변 등 이산화질소의 노출이 우려되는 교실에 대하여 실내 공기 중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현장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 의 평균치가 기준치(0.05ppm)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시험방법인 화학발광법으로 측정한다.

8) 라돈(Rn)

지하에 위치한 교실에 대하여 단기측정방법인 연속모니터링법으로 1차 측정하고, 1차 측정결과가 4pCi/L(0.148bq)이상이면 장기측정법에 의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으로 측정하여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400\mu g/m^3$) 이하이어야 한다.

10) 석면(Asbestos)

교실 건축시 보온, 단열재 등으로 석면을 사용한 경우 부유하는 미세먼지 중의 석면섬유를 멤브레인필터로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며, 기준치(0.01개/cc이하)를 초과하면 전자현미경으로 재 측정한다.

11) 오존(O₃)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 팩스 등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용기기가 밀집된(66㎡ 당 5대 기준이상) 행정실, 교무실, 실습실 등에 대하여 공기 중 오존의 농도를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0.06ppm)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자외선광도법(자동연속)으로 측정한다.

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보건실 등의 카페트, 침대, 섬유가구 등에 대하여 진드기의 마리수를 현미경계수법 또는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으로 측정하며, 진드기가 100마리/ m^2 이하(진드기알레르겐 $10\mu g/m^2$ 이하)이어야 한다.

바. 폐기물

- 1)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이 관련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수거처리 방법 및 처리횟수에 맞게 구분되어 수거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2) 폐기물 용기의 재질 및 구조의 적정여부와 배치장소 주변의 위생상태 등을 조사한다.
- 3) 실험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다.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 1)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 등의 청결상태, 식품별 보관요령 준수 여부, 무신고(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부패·변질된 식품, 무신고(허가)로 조리된 식품의 판매여부를 확인한다.
- 2)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여부, 조리실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관리, 식품조리·취급·보관의 적 정성,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등을 확인한다.

아. 먹는 물

- 1)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물(지하수·수돗물 및 정수기 통과수 등)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 통과수(냉·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 1) 학교내 상·하수도 설계도면 비치 사항 등을 조사하며, 누수 및 노후여부를 확인한다.
- 2)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되, 직접 음용하거나 음식의 조리 및 세척, 손 씻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이경유하는 저수조에 대하여는 청소 및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 3) 우수 및 오수 등의 배수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및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차. 화장실

화장실과 부속시설·설비 및 주변의 위생상태와 청결상태, 소독시설유무, 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손 씻는 시설 및 비품(비누, 화장지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카.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 1) 학교 내 청결유무, 청소용구의 수량 및 보관상태, 일상청소 및 대청소 등의 실시여부 등을 조사하며, 취약한 장소 및 시기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 여부 를 확인한다.
- 2) 학교 내에 파리, 모기, 바퀴, 나방파리 등의 위생해충 및 쥐의 서식유무, 교 내 수목의 방제 시기 및 약제의 사용 유무를 조사한다.
- 3) 수영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2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한다.

제3장 점검결과의 기록·비치 및 확인

1. 점검결과의 기록 및 비치

학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가.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별표2】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의 기록은 별지 서식과 같으며,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제출

- 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장이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별지 서식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
 - 2) 검사기관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오염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은 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공기 질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함.

【별표 1】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 기	연 간 점검횟수	비고
1	환기	동 절 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동 절 기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 절 별	4회 이상	
4	소음	하 절 기	1회 이상	
5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5-1	미세먼지(PM10)	동 절 기	1회 이상	
5-2	이산화탄소(CO ₂)	동 절 기	1회 이상	
5-3	폼알데하이드(HCHO)	하 절 기	1회 이상	
5-4	총부유세균	하 절 기	1회 이상	
5-5	낙하세균	하 절 기	1회 이상	보건실·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 절 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5-7	이산화질소(NO ₂)	동 절 기	1회 이상	교실
5-8	라돈(Rn)	-	1회 이상	지하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 절 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 내 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사용 학교
5-11	오존(O ₃)	동 절 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 절 기	1회 이상	보건실
6	폐기물	하 절 기	2회 이상	
7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하 절 기	2회 이상	
8	먹는 물	계 절 별	4회 이상	
9	상수도 및 하수도	하 절 기	1회 이상	
10	화장실	하 절 기	4회 이상	
11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하 절 기	4회 이상	

【별표 2】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사항

항 목	점 검 내 용	비고
환 기 의 적 정 성	교실 내의 불쾌한 냄새 유무, 창문 개·폐에 따른 자연환기의 적정성 또는 기계환기 장치의 적정 가동 여부	
밝 기 의 적 정 성	조명기구의 적정수 운영 여부 및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온·습도의 적 정 성	교실내 냉・난방으로 적정 온・습도의 유지여부	
소 음	교실 외부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의 존재여부	
공기질의 적 정 성	교실내 학생들이 호흡기 계통의 통증, 두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음용시설 등 청결성	음용시설과 구내매점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청 소	교실의 청결상태, 쓰레기통, 청소도구의 관리상태 등	
기 타		

【별지 서식】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특별) 점검표

1. 일반현황

학 교 명		학교	담	당 자		
건축구조			설비	냉방	중앙)	실, 개별) 실
				난방	중앙)	실, 개별) 실
(건축년월)			현황	환기	중앙)	실, 개별) 실
	총 교실수	실	먹는 물		먹는물	상수도, 지하수, 기 타
교실수	일반교실수	실			저수조	개
	특별교실수	실	시	설	정수기	개(먹는샘물 : 개)
	점검기간	~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구분					
	(점검사유)					

2. 실내환경 측정결과(측정자 :)

		`							
			측정결과(평균)						
측 정	측 정	측 정	환기		조도(룩스)		온도	습도	소음
교실명	지점수	시 간		त्री हो मि	∋ોો ઢ ે⊾πને	조도비			
	, – ,	, –	(횟수/h)	칠판면	책상면	(최대/최소)	(℃)	(%)	[dB(A)]
		: ~ :				/			
		: ~ :				/			
		: ~ :				/			
		: ~ :							
외부		: ~ :	-	_	_	_			

3. 공기질 등 측정결과(소속 : 측정자 :)

측 정	측 정	측 정			측정결고	나 (평균)		
I ' -			PM10	CO ₂	НСНО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CO
교실명	지점수	시 간	$(\mu g/m^3)$	(ppm)	(μg/m³)	(CFU/m³)	(CFU/실)	(ppm)
		: ~ :						
		: ~ :						
		: ~ :						
		: ~ :						
외 부		: ~ :			-	_	_	-

					측정결과	나 (평균)		
측 정 교실명	측 정 지점수	측 정 시 간	NO ₂ (ppm)	Rn (pCi/L)	TVOC (µg/m³)	벤 젠 (µg/m³)	톨루엔 (μg/m³)	에틸벤젠 (µg/ m³)
		: ~ :						
		: ~ :						
		: ~ :						
		: ~ :						

 $210\text{mm} \times 297\text{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측정결고	ㅏ (평균)		
측 정 교실명	측 정 지점수	측 정 시 간	자일렌 (μg/m³)	스티렌 (μg/m³)	석 면 (개/cc)	오 존 (ppm)	진드기 진드기 (마리/m²)	기 등 알르겐량 (µg/m²)
		: ~ :						
		: ~ :						
		: ~ :						
		: ~ :						
외 부		: ~ :	-	-	-		-	-

[%] 온도, 습도, 소음, PM10, CO $_2$ 및 오존은 외기로부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기 추가 측정

4. 일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점검자 :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횟수는 적당한가		
 폐기물	폐기물 용기의 재질,구조 등은 적당한가		
	폐기물용기 및 배치장소는 청결한가		
	실험폐수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는 청결한가		
구내매점	매점의 취급품목은 적정하며 관리요령을 준수 하는가		
및	일반음식점 등의 신고 및 변경은 없는가		
	식당 시설·설비 및 기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가		
구내식당	식당의 식품조리, 취급, 보관은 위생적인가		
	조리종사원은 정기검진을 실시하였는가		
먹 는 물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상 수 도	상·하수도 도면이 비치되어 있는가		
및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물탱크는 정기적 청소와 점검을 하였는가		
하수도	우수 · 오수시설 설비는 제기능을 하는가		
	청결상태, 채광·조명, 환기상태가 양호한가		
화 장 실	손씻는 전용시설과 소독설비가 있는가		
와 6 년	비품비치 상태 및 시설설비는 고장이 없는가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청소·소독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쥐 및 위생해충 등을 제거하여 없는가		
기 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환경위생	수영조 욕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의 관리는 양호한가		
	입영자의 위생·안전지도가 이루어지는가		

※ 작성기준 : 점검결과는 우수 "A", 보통 "B", 미흡 "C"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학교환경위생 및 식 품위생 관리 매뉴얼」 참조

5	5. 종합의견			

2015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발간등록번호 : 전북 2015 - 101

발 행 일: 2015. 03.

발 행 처:전라북도교육청